규제영향분석서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<목 차>

과태료 부과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**소관부처**	금융위원회	**작성자**	**이름**	김원태
	담당부서(과)	전자금융과		**직급**	5급
	국장	김학수		**연락처**	02-2100-2971
	과장	김연준		**이메일**	wtkim05@korea.kr

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 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과태료 부과기준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, 별표3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4항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강화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’17.5.23.∼7.3.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 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□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
□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기준 등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되, 여타 금융업법과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·유사한 수준으로 부과기준 설정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유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th>의견 수렴방식</th><th>의견 내용</th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 등</td><td>전자금융법상 금융회사 및 전금업자 등</td><td>입법예고</td><td>-</td></tr>
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</td><td>-</td><td>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9.기대효과</td><td colspan="3">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규제의 적정성</td><td rowspan="2">10.영향평가 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해당 없음</td><td>해당 없음</td><td>해당 없음</td></tr>
<tr><td>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</td><td colspan="3">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을 생략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12.일몰설정 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 없음</td></tr>
</table>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<신 설>	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1호	600
나.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2호	600
다.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1호	2,000
라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3호	600
마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1호	3,000
바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1호	5,000
사.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4호	600
아.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2호	2,000
자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3호	2,000
차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3호	400

카.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·평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4호	1,200
타.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5호	600
파. 법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5호	1,200
하.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6호	600
거. 법 제22조제1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7호	1,000
너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6호	2,000
더.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, 설명,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8호	600
러.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9호	600
머.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10호	600
버. 법인인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2호	3,000
서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2호	1,500
어. 법인인 자가 법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,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3호	5,000
저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9조제3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, 자료제출,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3호	2,5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에는 1,000만원으로 한다.
처.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경우	법 제51조제2항 제7호	2,000
커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	법 제51조제1항 제4호	3,000
터.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1조제3항 제12호	1,000

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(추진배경)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(과태료 부과한도 인상,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근거 마련 등)됨에 따라 여타 금융업법과의 **제재 형평성을 제고**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**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**

* 현재 전자금융·저축은행·신협법 시행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

□ (정부개입 필요성) **과태료**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기준 등을 **법령에 규정할 필요**
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□ (대안의 내용) **위반행위의 중요도, 여타 금융업법령과의 형평성을 감안**하여 부과기준 설정 → **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100%, 60%, 30%, 20%**를 기준 금액으로 설정

1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0% 또는 60% 설정

- **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, 거래 효력 발생** 등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**100%로 설정**

- **예방적 조치, 보고·통지·절차 마련** 등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**60%로 설정**

<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>

위반행위	부과한도	부과기준	사 유
안전성 기준 위반	5,000만원	100%	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와 직결
전자지급거래 효력발생 의무 위반	2,000만원	100%	거래 효력과 직접 관련됨
취약점 분석·평가 의무 위반		60%	예방적 조치
보완조치 이행계획 미수립		60%	예방적 조치
거래내용 서면교부 의무 위반	1,000만원	60%	절차 위반
오류 원인·처리결과 미통지		60%	통지 의무 위반
선불등 양도시 중앙시스템경유 의무 위반		60%	절차 위반
정보기술부문 계획 미제출		60%	보고 의무 위반
취약점 분석 결과 미제출		60%	보고 의무 위반
침해사고 금융위 통지 의무위반		60%	통지 의무 위반
분쟁처리 절차 마련		60%	절차 위반

② **여타 금융업법과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**에 대해서는 **동일·유사한 수준**으로 부과기준 설정

- **검사 거부·방해·기피,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** 등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높고 **다른 입법례도 유사**한 경우 **100%로 설정**

- **보고·통지 의무 위반** 등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**다른 입법례도 유사**한 경우 **60%로 설정**

- **법인이 아닌 경우,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** 50~20%로 설정

< 제재 형평성을 감안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>

위반행위	부과한도	부과기준	유사 입법례
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	5,000만원	60%	자본시장법·여전법: 과태료 없음
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		60%(법인) 30%(비법인)	지주법·은행법 등: 법인 60%, 비법인 30%
검사 거부·방해·기피		100%(법인) 50%(비법인) 20%(임직원)	지주법·은행법·자본시장법 등: 법인 100%, 비법인 50%, 임직원 20%
업무보고서 미제출·허위제출		60%	지주법·은행법 등: 60%
정보보호최고책임자 미지정	2,000만원	100%	신용정보법: 100%
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의무 위반(지시한 경우)		100%	지배구조법: 겸직지시 100%, 겸직 20%
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금지 의무 위반		20%	
정보보호업무 재위탁금지의무 위반		100%	자본시장법: 벌칙
거래기록 파기의무 위반		100%	신용정보법: 80%(한도: 3,000만원)
거래기록 생성·보존의무 위반	1,000만원	100%	신용정보법: 벌칙
약관명시·설명,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		60%	자본시장법 등(설명의무): 60%
약관 제정·변경시 금융위 보고의무 위반		60%	자본법·여전법 등: 60%
전자금융업무별 회계처리의무 위반		100%	여전법: 100%

□ **(선택 근거)**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및 부과기준 신설은 **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**를 위해 추진한 **「제재개혁」**('15.9월)*의 일환

* 전자금융거래법 개정('17.10.18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할 근거 마련

○ **규제대안**은 업권간 형평을 맞추고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**제재의 실효성·형평성 측면**에서 **현행유지안보다 우위**

○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**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**에서도 규제대안이 **현행유지안보다 우위**

□ 한편, 과태료 부과한도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**신설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**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으로 인한 **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**

*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금융회사 등	시행령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
3. 기대 효과

□ "솜방망이 금전제재"가 사라지고 **제재의 실효성 제고**

○ 대형 금융사고·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**"솜방망이 제재"라는 비난**이 많았음

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**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**하여 **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**(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)**을 반영**함으로써 금전제재 제도의 **실효성 제고 기대**

□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·금액의 **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**하여 **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**

○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**업권간 제재 유형이나 수준이 다른 문제**

⇨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**업권별 제재 형평성**을 제고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□ **(규제목적)**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를 통해 **유사 위법행위를 억제**하여, **금융회사의 신뢰성,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** 등 편익을 제공

□ **(규제수단)** 과거 **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준**으로 부과하던 방식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**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**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□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□ **영국·미국** : 영국은 Financial Penalty,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**단일 구조**로 우리나라의 **과태료·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**를 부과

○ **우리나라**는 **과태료·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·부과요건·부과금액 등을 구분**하고 있으나,

○ **영국과 미국**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**“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”**로 **포괄적**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**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**

-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*

*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"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"으로 규정

- **미국**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**3단계*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**을 규정

* 위반행위 1일당 (1단계) $7,500 / (2단계) $37,500 / (3단계) $1,425,000

- 미국이나 영국은 **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** 하에 **거액의 금전 제재를 부과**해 옴

· '16년 세계 최대은행인 **웰스파고**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(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)가 **$1억**(1천억원), OCC가 **$3.5천만**(3.5백억원), LA City가 **$5천만**(5백억원)의 **민사제재금**을 부과

· '13년 **미국 금융당국**은 **JP모건**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**$2억**(2천억원), FRB가 **$2억**(2천억원), OCC가 **$3억**(3천억원)의 민사제재금을, **영국 금융당국**은 **￡1.4억**(2천억원) 등의 **민사제재금**을 부과

· '11년 SEC는 **내부자 거래** 관련 **갤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**에 대해 **부당이득인 $5천만**(5백억원)**의 약 2배**에 가까운 **$9천만**(9백억원)**의 민사제재금**을 부과

□ **독일 · 일본 : 우리나라와 유사**하게 관련 법률에서 **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**

○ **독일**은 과태료 · 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, **Bußgeld라는 단일 금전 제재 체계**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(최대 100만유로)

○ **일본**은 우리나라와 같이 **과태료 · 과징금*을 구분**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**일부 사유**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**고액의 벌금형**(최대 30억원)**을 별도로 규정**하고 있음

*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

o **타법사례**

□ **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**

○ **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**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**공정거래법 시행령**과 비교하더라도 **매우 낮은 편**

- **공정거래법**은 허위 공시,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**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**까지 과태료를 부과*

*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
- 반면, **전자금융거래법**은 **시행령에서 최대 5천만원**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

□ **금융법 사례 분석**

①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**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**으로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·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

* 과태료 부과금액('15년): 기관 33.6억원(건당 12백만원), 개인 29.2억원(건당 5백만원)

⇨ 법인인 자 **최대 1억원**, 법인이 아닌 자(임직원 등) **최대 5천만원**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등 **11개 주요 금융법*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**

* 금융지주·은행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여전·저축은행·신협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

②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**업권간 제재 형평**을 제고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□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및 부과기준 신설은 **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**를 위해 추진한「**제재개혁**」('15.9월)의 일환

- ○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**신설되는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**되고, 과태료 기준금액도 타기관,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**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**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

o 규제 차등화 방안

□ 과태료는 **동일 권역**의 기관 등이 행한 **동일한 위반행위**에 대해 원칙적으로 **동일한 수준의 제재**가 적용됨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

□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에 불과함

- ○ 또한,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신설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**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**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□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신설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**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**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**과태료 부과기준 신설**은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**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**한 **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**('15.9월)의 후속조치임

○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('15.12월, '16.10월)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(심층인터뷰 등)를 통해 **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·수렴**하였음

2. 향후 평가계획

□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□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**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을 강화**하는 **「제재개혁」 정책의 일환**으로

○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**하는 **정책 목표 달성** 기대